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진재해대책법」을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으로 정비(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)
- 2)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비하고,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용어 변경(안 제5조제4항제1호)
- 3)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을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으로 정비(안 제7조제2항)
- 4) 띄어쓰기 정비(안 제5조제5항, 제7조제3항, 제7조제4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#### 2) 주요 내용

가) 「지진재해대책법」을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으로 정비(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)

- 「지진재해대책법」(2015. 7. 24.)이 제명 변경으로 「지진·화산 재해 대책법」으로 정비

나)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비하고, “건설기술자”를 “건설기술인”으로 용어 변경(안 제5조제4항제1호)

-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서 「건설기술진흥법」으로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(2014. 5. 23.) 해당 조문을 변경함

다)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을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으로 정비(안 제7조제2항)

- 제명이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(2016. 12. 23.)으로 변경됨

라) 띄어쓰기 정비(안 제5조제5항, 제7조제3항, 제7조제4항)

#### 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일부 개정 조항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적기에 정비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,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세심한 조례의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